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방형 직위를 직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훈령·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및 「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」이 개정되고, 과학기술분야의 전문성이 국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기술직군의 명칭을 과학기술직군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「공무원임용령」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,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7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기 위하여 「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」을 개정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

2) 입법예고(2023. 0. 00.~0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중 “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”을 “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”으로 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”을 “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”으로 한다.

제5조 중 “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”을 “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”으로 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, 교류협력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”을 “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, 교류협력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”으로 한다.

제7조제2항 중 “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”을 “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”으로 한다.

제8조제1항 단서 중 “7퍼센트”를 “10퍼센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17명(”을 “18명(3급 또는 4급 1명, ”으로 한다.

제9조를 삭제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”을 “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”으로 한다.

별표1, 별표1의2, 별표2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[별표 1]

새만금개발청 공무원 정원표(제8조제1항 본문 관련)

총계	136
정무직 계	1
청장	1
일반직 계	135
고위공무원단	4
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	3
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	10
서기관·과학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 무관	4
서기관·과학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·공업사무 관·농업사무관·임업사무관·해양수산사무관 ·환경사무관·시설사무관·전산사무관·방송 통신사무관 또는 방재안전사무관	6
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	20
행정사무관·시설사무관·환경사무관 또는 공업사 무관	1
행정사무관·공업사무관·농업사무관·임업사무 관·해양수산사무관·환경사무관·시설사무관 ·전산사무관·방송통신사무관 또는 방재안전사 무관	16
통계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	1
공업사무관·농업사무관·임업사무관·해양수산 사무관·환경사무관·시설사무관·전산사무관	6

·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방재안전사무관	
행정주사 또는 시설주사	17
행정주사 · 시설주사 · 환경주사 또는 공업주사	1
행정주사 · 공업주사 · 농업주사 · 임업주사 · 해양수 산주사 · 환경주사 · 시설주사 · 전산주사 · 방송통 신주사 또는 방재안전주사	15
통계주사 또는 전산주사	1
공업주사 · 농업주사 · 임업주사 · 해양수산주사 · 환경주사 · 시설주사 · 전산주사 · 방송통신주사 또는 방재안전주사	7
행정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	10
행정주사보 · 시설주사보 · 환경주사보 또는 공업주 사보	1
행정주사보 · 공업주사보 · 농업주사보 · 임업주사 보 · 해양수산주사보 · 환경주사보 · 시설주사보 · 전산주사보 · 방송통신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 사보	5
공업주사보 · 농업주사보 · 임업주사보 · 해양수산 주사보 · 환경주사보 · 시설주사보 · 전산주사보 · 방송통신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	3
운전주사보	1
운전서기	1
운전서기보	1
기록연구사	1

[별표 1의2]

새만금개발청 공무원 정원표(제8조제1항 단서 관련)

총계	137
정무직 계	1
청장	1
일반직 계	136
고위공무원단	4
부이사관 ·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	3
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	10
서기관 · 과학기술서기관 ·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 무관	4
서기관 · 과학기술서기관 · 행정사무관 · 공업사무관 · 농업사무관 · 임업사무관 · 해양수산사무관 · 환 경사무관 · 시설사무관 · 전산사무관 · 방송통신사 무관 또는 방재안전사무관	6
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	20
행정사무관 · 시설사무관 · 환경사무관 또는 공업사 무관	1
행정사무관 · 공업사무관 · 농업사무관 · 임업사무관 · 해양수산사무관 · 환경사무관 · 시설사무관 · 전 산사무관 ·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방재안전사무관	16
통계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	1
공업사무관 · 농업사무관 · 임업사무관 · 해양수산사 무관 · 환경사무관 · 시설사무관 · 전산사무관 · 방 송통신사무관 또는 방재안전사무관	6
행정주사 또는 시설주사	17

행정주사 · 시설주사 · 환경주사 또는 공업주사	1
행정주사 · 공업주사 · 농업주사 · 임업주사 · 해양수산 주사 · 환경주사 · 시설주사 · 전산주사 · 방송통신주 사 또는 방재안전주사	15
통계주사 또는 전산주사	1
공업주사 · 농업주사 · 임업주사 · 해양수산주사 · 환 경주사 · 시설주사 · 전산주사 · 방송통신주사 또는 방재안전주사	7
행정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	10
행정주사보 · 시설주사보 · 환경주사보 또는 공업주 사보	1
행정주사보 · 공업주사보 · 농업주사보 · 임업주사보 · 해양수산주사보 · 환경주사보 · 시설주사보 · 전 산주사보 · 방송통신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	5
공업주사보 · 농업주사보 · 임업주사보 · 해양수산주 사보 · 환경주사보 · 시설주사보 · 전산주사보 · 방 송통신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	3
운전주사보	1
운전서기	1
행정서기보	1
운전서기보	1
기록연구사	1

[별표 2]

새만금개발청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(제10조제2항 관련)

신재생에너지기반과(준속기한: 2025년 6월 7일)

총계	3
일반직 계	3
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	1
행정사무관 · 공업사무관 · 농업사무관 · 임업사무관 · 해양수산사무관 · 환경사무관 · 시설사무관 · 전산사 무관 ·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방재안전사무관	1
행정주사보 · 공업주사보 · 농업주사보 · 임업주사보 · 해양수산주사보 · 환경주사보 · 시설주사보 · 전산주 사보 · 방송통신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	1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대변인) 대변인은 <u>서기관</u> 또는 <u>기술서기관</u> 으로 보한다.	제3조(대변인) ----- <u>과학기술</u> <u>서기관</u> 또는 <u>서기관</u> -----.
제4조(기획조정관) ① (생 략)	제4조(기획조정관) ① (현행과 같 음)
②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 당관, 혁신행정담당관 및 정보 민원담당관을 두되, 각 담당관 은 <u>부이사관 · 서기관</u> 또는 <u>기술</u> <u>서기관</u> 으로 보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-- <u>부이사관 · 과학기술서기관</u> <u>또는 서기관</u> -----.
③ ~ ⑤ (생 략)	③ ~ ⑤ (현행과 같음)
제5조(운영지원과) 운영지원과장 은 <u>부이사관 · 서기관</u> 또는 <u>기술</u> <u>서기관</u> 으로 보한다.	제5조(운영지원과) ----- -- <u>부이사관 · 과학기술서기관</u> <u>또는 서기관</u> -----.
제6조(개발전략국) ① (생 략)	제6조(개발전략국) ① (현행과 같 음)
② 개발전략국장 밑에 계획총괄 과 · 신산업전략과 · 기반시설과 및 교류협력과를 두되, 계획총 괄과장, 신산업전략과장 및 기 반시설과장은 <u>부이사관 · 서기</u> <u>관</u> 또는 <u>기술서기관</u> 으로, 교류 협력과장은 <u>서기관</u> 또는 <u>기술서</u> <u>기관</u> 으로 보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부이사관 · 과학기</u> <u>술서기관</u> 또는 <u>서기관</u> 으로, 교 류협력과장은 <u>과학기술서기관</u> <u>또는 서기관</u> ---.
③ ~ ⑥ (생 략)	③ ~ ⑥ (현행과 같음)

제7조(개발사업국) ① (생략)

② 개발사업국장 밑에 사업총괄과 · 산업진흥과 · 국제도시과 및 관광진흥과를 두되, 각 과장은 부이사관 ·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.

③ ~ ⑥ (생략)

제8조(공무원의 정원) ① 새만금개발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. 다만,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29조제2항 및 「새만금개발청 직제」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2와 같으며, 별표 1의2의 정원 중 행정서기보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.

② 새만금개발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7명(5급 8명, 6급 6명, 7급 3명)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.

제7조(개발사업국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 부이사관 ·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-----.

③ ~ ⑥ (현행과 같음)

제8조(공무원의 정원) ① -----

-----.

----- 10퍼센트-----

-----.

② -----
----- 18명(3급 또는 4급 1명, 5급 -----

-----.

제9조(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) <u>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24조제5항에 따라</u> <u>국제도시과장은 임기제공무원</u> <u>으로 보할 수 있다.</u> 제10조(신재생에너지기반과) ① 신재생에너지기반과의 과장은 <u>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</u> <u>한다.</u> ② (생략)	<u><삭 제></u> 제10조(신재생에너지기반과) ① - ----- <u>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--</u> ----. ② (현행과 같음)
---	---